

의안 번호	1700	【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 [플랫폼]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20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. 21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2. 22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가. 제안이유

- 「이팔청춘 마을공방은 기존 지역기반 소규모 문화관광 업체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,
-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역 중심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종사자	시설현황
이팔청춘 마을공방	새즈문해 거리 28 (성남동)	187.5㎡ (단층)	3명 (대표 1,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및 공간 운영 2)	○ 체험 및 전시 공간, 공유 주방, 소공연, 사무실 등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 운영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
-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, 참여 등을 통한 소통창구 활용
-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지역 참여자 및 문화관광사업 자료 구축
-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채널 확대
- 그 밖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- 위탁기간 : 2021. 3. 1. ~ 2021. 12. 31.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- 소요예산 : 50,000천원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동의안은 중구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진흥 조례」 제27조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

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관광객 유치
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 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 4.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
 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